

부산직할시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4. 8. 8 사하구청장

나. 회부일자 : 1994. 8. 10

다. 상정일자 : 제34회 사하구의회(임시회)

제1차 총무사회산업위원회('94. 8. 19) 상정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기획감사실장 성종무)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법 개정(94. 3. 16) 및 동법시행령 개정(94. 7. 6)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은 경우 그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지급(안 제3조)
- 의원의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를 입었을 때 보상금지급 기준 마련(안 제4조)
-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결과 구청장이 보상금 지급결정하여 지급(안 제7조)
- 직무로 인한 사망·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한 「부산직할시 사하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」 구성(안 제9조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

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이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중 신체에 상해를

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를 제정하여 의원이 직무상 사망·장애·상해를 입었을 경우 금전적으로 손해를 전보(填補)하여 줌으로써 사회배분적 정의차원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론요지 : 없 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(재석의원 12명중 전원찬성)